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76,913,147	14,307,394
일반회계		371,777,728	11, 153, 332
특별회계		105, 135, 419	3,154,063
	공기업특별회계	3,672,096	110,163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	3,672,096	110,163
	기타특별회계	101,463,323	3,043,9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607,529	498,22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49,649	19,489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38,335,585	1,150,068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6,303,764	189,113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8,435,353	553,061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1,525,390	45,762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3,574,948	407,248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915,802	27,474
	의령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5,087,503	152,625
	의령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7,800	83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생략"

제 4조 "생략"

제 5조 "생략"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18,467천원으로 한다.

제 7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